

결의 2호(2023)

기후변화 및 남극에 관한 헬싱키 선언 (Helsinki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Antarctic)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45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TCM) 및 제25차 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CEP) 회원국인 우리는,

남극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 지구적 기후계에 있어 남극 및 남극해의 중대한 역할과 남극 빙권 및 해양 환경 변화가 지구 기후와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관측, 모델링 및 전 지구적 평가가 남극 해상·육상 물리계 및 생물계의 중대 변화를 기술하며, 남극 및 남극해의 환경 변화가 전 지구적 기후 영향 요인과 관련이 있고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구에 부합하는 추세에 맞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더욱 돌이킬 수 없는 변화 발생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며,

조율된 글로벌 기후변화 완화·적응 행동의 추가 지연으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살만한 미래를 보장하는 기회의 창을 놓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남극 기후변화, 이에 따른 남극 환경 및 전 지구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개선 필요성, 그리고 적응관리 및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업무프로그램 Climate Change Response Work Programme(CCRWP) 결의 4호(2015) 및 결의 8호(2021)를 통한 대응을 포함해 ATCM 및 CEP의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 작업을 역설하고,

CEP가 채택한 CCRWP의 이행 및 후속 조치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부속그룹의 중요한 기여를 인식하며,

2022년 ATCM이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남극기후변화와 환경 보고서(ACCE)」를 환영하였고, 남극 환경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 및 이에 따른 전 지구적 영향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SCAR의 조언을 환영했던 것을 포함해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 4호(2022) 및 결정 4호(2022)를 채택했음을 강조하며,

UNFCCC 목표와 원칙, 그리고 UNFCCC가 채택한 파리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작업을 인식하며,

2021년 ATCM 파리선언을 상기하고, 그리고 기후변화가 남극 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남극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개선하기 위해 남극 기후에 미치는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행동을 이행한다는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로는 대기·해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해양은 산성화되며, 대기·해양 순환 양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모든 형태의 빙권 얼음이 지속적으로 소실되며,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과학적 증거가 분명히 제시함을 인식하며,

수 세기에서 수천 년 동안 돌이킬 수 없을 빙상 손실로 인해 해수면이 수 미터 상승하면 특히 해안가 저지대 지역주민 수백만 명에게 파괴적이거나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깊이 우려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최신·최적의 전문 지식과 과학적 발견을 고려하고, 2023년 3월 20일에 발간된 「IPCC 제6차 평가주기(AR6) 종합보고서」를 포함하며,

남극조약 당사국들은 연구, 감시, 관리, 환경보호, 옹호, 의사소통과 같은 행동을 위해 최신·최적의 과학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인지하면서,

이에 우리는,

1. 남극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 영향을 각국 내,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소통하고, 남극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 및 이에 따른 지구적 영향을 방지할 필요성을 알리는 우리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2. 변화하는 기후의 환경 영향을 완화·대비하고, 환경 영향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위해 남극조약 체제 내에서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호 위원회의 진행 중인 작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작업프로그램의 이행과 정기 검토를 우선순위로 지속할 것을 재확인한다.
3. 2032-33년 제5차 국제 극지의 해(IPY) 목표를 옹호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IPY 프로젝트 및 실행 기획자들의 과학적 노력을 지원하는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며, IPY 파트너들과 함께 SCAR 및 COMNAP가 이 기회를 빌어 기후·환경 변화가 남극 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전 지구적 영향을 이해함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장려한다.
4. 국가남극프로그램, 관광업종사자, 비정부기관을 포함한 남극관련 모든 기관·업계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감축하고, 탄소 감축경로를 탐구하며, 탄소중립('넷제로') 운영 방향으로 나아가고, 남극 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이를 위해 가능한 정책권고 사항을 계속해서 숙고하도록 장려한다.
5. 다양한 미래 지구 온도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남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구 기후 및 향후 해수면 상승 통제에 있어 남극 및 남극해의 전 지구적 역할 이해와 관련해 지식을 도약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통한 대규모 현장기반 연구와 정보교환 노력을 계획·실행하도록 SCAR 및 COMNAP를 포함해 협력을 강화한다.
6. SCAR가 연례 ACCE 갱신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남극 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에 담긴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과학 및 기술 자문을 고려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재확인한다.

7. 의사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외래종 유입 위험에 대한 평가 개선을 포함하여 남극 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재확인한다.
8. 남극 인프라, 사적지 및 기념물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고, 남극 사적지 및 기념물 보존 관리 계획에 적절한 완화·적응·관리 조치를 포함하고자 한다.
9. 관측 간 최적의 공간 분포, 비교 가능성, 그리고/또는 상호 보완성을 갖추고 주요 글로벌 관측 및 모델링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입력을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조율된 남극 기후와 환경 관측·감시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기후변화가 남극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남극 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에 따른, 그중에서도 지역 보호·관리를 포함해 모든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1.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7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에 따라 화석 연료의 추출을 포함한 과학연구 이외의 남극 광물자원활동이 여전히 금지됨을 강조한다.

결의 3호(2023)

과학연구 이외의 남극 광물자원활동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 재확인

(Reaffirming ongoing commitment to the prohibition on Antarctic mineral resource activities, other than for scientific research)

당사국 대표들은,
발효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정서")*가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현재 노력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의정서 제7조는 남극조약지역에서 과학연구 이외의 광물자원과 관련된 활동을
금지함에 주목하며,

의정서가 2048년에 만료된다는 그릇된 믿음을 남극조약 체제 밖의 다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의정서에는 유효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25조는 의정서가 발효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한 후 남극조약협의 당사국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 회의가 가능함 만을
언급함을 상기하면서,

당사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남극조약 또는 의정서가 2048년 또는 그 외 시기에 만료된다는 속설을 불식
시키도록 노력한다.
2. 의정서 제7조에 따라 과학연구 이외의 광물자원과 관련된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은 남극 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에 대한 유익을 인식한다.
3. 의정서 제7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4. 남극 환경 및 이에 종속되고 연관된 생태계의 포괄적인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순위 사안으로서 이 금지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그들의 굳은
의지를 선언한다.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전문 URL : [외교부 남극관련조약및법령](#)